

## 실기시험 수험자 위그 준비 및 유의사항

### 1. 위그 및 견체모형

#### 1 위그 및 견체모형

- ① 위그 및 견체 모형은 수험자가 지참하고 시험실 입실
- ② 위그의 색깔은 하얀색이어야 함
- ③ 위그에 패턴이나 색칠이 없어야 함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④ 견체모형은 딱딱한 재질로 다리 부위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함
- ⑤ 입실 전 위그의 브레이싱 완성
- ⑥ 입실 전 한쪽 귀 안쪽에 수험자 이름 표기

#### 2. 텁글이

등급	최소 텁길이	클립	비고
사범	13cm 이상	쇼클립	수험자가 준비한 위그에 물리력을 가하지 않은 자연상태에서 셋업부위는 최소 13cm이상. 셋업이외의 부위는 최소 7cm 이상이 되어야함.
1급			
2급	7cm 이상	팻클립	
3급			

#### 3. 눈, 코, 꼬리

- ① 위그에 눈,코, 꼬리와 꼬리털 부착
- ② 눈과 코는 정해진 위치에 장착 (글루건 또는 본드로 붙이는 것도 허용)
- ③ 꼬리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꼬리를 빼고 꼬리의 위치에 기로, 세로 1cm이하 크기로 가위로 텁을 오려내어 위치를 표시하는 것만 허용. 꼬리털은 마무리 단계에서 부착하여 사용.
- ④ 눈,코,꼬리 중 한 가지라도 없을 경우 해당 부위 체점예만 반영됨

#### 4. 귀/털/반입

- ① 귀의 텁은 사전에 양쪽으로 밴딩하거나 땋아서 시험실에 입실
- ② 귀의 텁을 머리위로 묶는 것은 작업에 방해가 되므로 금지
- ③ 1급과 사범 셋업 부위는 하나로 묶어야 함.

#### 5. 테이블/매트

- ① 다리 부위의 텁이 움직이지 않도록 네 개의 발에 모두 고무 밴드를 고정하여 입실
- ② 다리의 수평 유지를 위하여 발바닥 부위에 페드 부착 허용. 단, 페드 부착물은 페드의 크기보다 작아야 함.

### 나. 유의사항

- ① 시험 시작 전과 종료 후 수험자 정면에서 작품 사진 촬영
- ② 수험자는 신분증과 수험번호표 지참
- ③ 학원 등 소속을 유추할 수 있는 표시가 있거나 디자인의 미용가운 및 미용도구 반입·사용 불가.
- ④ 작업 종료 후 테이블 위 및 주변의 텁을 정리하고 채점에 협조
- ⑤ 채점이 종료되면 미용가운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정리 후 퇴실
- ⑥ 테이블 암 설치를 원할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 설치
- ⑦ 3급은 블런트 가위만 사용
- ⑧ 실검을 이용한다는 개념을 갖고 작업 (종요)
- ⑨ 원손잡이는 본인이 직접 협회에 원손잡이임을 메일송부 확인 (pskkc@naver.com)

### 다. 금지사항

- ① 시험도중에 테이블 암 설치
- ② 테이블 위에 매트 설치
- ③ 의자에 앉아서 작업
- ④ 채점에 방해가 되는 속임수
- ⑤ 감독위원의 지시 불이행
- ⑥ 시험실내 전시시설을 이용하여 클러퍼 등 사용 (시험실에 전원공급하지 않음)

### ■. 금점예상 유형

- ① 작업이외의 손의 위치
- ② 견체모형 발의 위치
- ③ 견체모형의 넘어짐
- ④ 견체모형 머리의 위치

### ■. 실격예상 사항

- ① 미용 전 후 사진이 누락된 경우
- ② 작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③ 위그의 몸체 부위가 찢어진 경우
- ④ 부정행위
- ⑤ 준비한 위그와 견체 모형이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 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시험시간 중 위그에서 손 떨어짐이 5회 이상인 경우
  - 시험시간 중 3개 이상의 견체모형 발이 바닥에서 5회 이상 떨어진 경우
  - 시험시간 중 견체의 방향이 3회 이상 바뀔 경우
  - 시험시간 중 견체가 3회 이상 넘어지거나 2회 이상 바닥으로 추락한 경우
- ⑦ 시험과제와 다른 스타일을 작업하는 경우
- ⑧ 위그에 색칠 또는 패턴을 표시한 경우
- ⑨ 3급 수험자가 블런트 가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끝.